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36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훈

변론 종결 2020. 11. 12.

판결 선고 2021. 1. 14.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01093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8,189,6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89,6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189,6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사.항과 아.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0. I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9. 12. 17.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매각대금 601,111,111원의 배당절차에 서 2020. 1. 29.

근저당권자 I 과 K, 확정일자 임차인 J 등의 후순위로, 가압류권자(청구채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인 원고에게 32,710,847원, 소유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액(그 중 일부 금액은 대상청구권에 기한 배당금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한 H를 위하여 분리됨)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는 피공탁자를 원고 및 H로,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공탁원인사실을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및 H의 대상청구에 대한 변제로 하여, 2020. 3. 26.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7179호로 40,211,010원, 추가로 이 법원에서 2020. 5.26. 같은 법원 2020년 금 제11626호로 5,887,272원, 합계 46,098,282원(이 사건 부동산중 취소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을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취소는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 원물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가액배상은 통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 이 때 취소채권자는 직접 가액배상의 이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 수령의 가액배상금을 안분배당 받을 수 있는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절차상의 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의 본래 작용과는 이질적인 면이 있다(민법 제407조).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따른 원물반환 원칙과 원물반환 · 가액배상 사이의 차이를 고려할 때 위 판례의 취지 역시, 저당권의 취득이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인 저당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저당권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이 특정성을 유지한 채 가처분 등으로 지급보류되어 있다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 자체를 원물의 대상(代償)으로 삼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로써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소유권의 이전이 사해행위인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지로 수익자인 경락 전의 소유자에게 지급보류된 배당금은 원물인 부동산의 잔존 교환가치가 대체된 것이므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원물반환에 준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해석되며, 원고의 주장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가액배상의 일환으로 보아 위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보류가 원고가 장차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배당금의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물반환에 준하여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채권자들의 공동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이 원고의 가압류로 아직 피고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D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것만 구하면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는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로 선택하여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한편 피고가 원고와 H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취소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46,098,282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변제공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의 결론과 반대로 피고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피고가 변제공탁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므로 여전히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아파트 P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고양시 일산동구 N 대 6916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Q호 철근콘크리트조 157.33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69163분의 92.493. 끝.